

I. 양도소득세 개요 및 재외국민 의미

□ 양도소득세 개념

Q1.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내죠?

- A.**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Q2. 어떤 자산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냅니까?

- A.**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 국내자산(소법§94) 및 국외자산(소법§118의2), 국외전출세(소법§118의9) 등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것입니다.
 - 따라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어 자본이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과세대상 자산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등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 파생상품, 비상장주식
기타자산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특정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비거주자는 국내에 소재한 과세대상 자산만 납세의무 부담

□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Q1.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A.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 소득세법 제94조(국내자산양도) 및 제118조의2(국외자산양도), 제118의9(국외전출세)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Q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뭐죠?

A.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오랜기간에 걸쳐 형성된 가치의 증가분을 일시에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 그 성격과 금액의 크기를 고려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 납세자에게는 자금부담을 분산시켜 주기 위하여 예정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산을 양도한 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3.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A.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며,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양도일	예정신고·납부	
	구분	기한
2019.7.1.	일반	2019.9.30.
	부담부 증여	2019.10.31.

- 주식(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제외)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일		예정신고·납부	
		기한	비고
2017.12.31.까지	2017.1.5.	2017.5.31.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2017.5.1.	2017.8.31.	
2018.1.1.이후	2018.1.5.	2018.8.31.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2018.7.1.	2019.2.28.	

※ 국외자산 중 주식 등에 대해 예정신고·납부규정 폐지, 소법 §118의8, 2012.1.1. 양도분부터

-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입니다.

Q4. 예정신고 시 첨부할 서류는 무엇이죠?

A.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기타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에 정지 증명원 · 잠정등급 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의 명세서 ■ 감가상각비 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도비 등의 명세서 ■ K-OTC거래 : 매매내역서 ■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서 ■ 연도 중에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대주주 등 신고서

Q5.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나요?

A.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의 분납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1차분 납부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그 다음날이 신고·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에는 분납분 납부기한은 그 다음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 재외국민

Q1. 재외국민의 정의는?

A.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른 인감 경유 대상 재외국민이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따른 재외국민을 말합니다.

Q2. 재외국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나요?

A. 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 재외국민이 소득법 §1의2①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며
- 자세한 내용은 “비거주자 판정과 과세방법”편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II. 비거주자 판정과 과세방법

□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구분

Q1.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A.** 국내에 주소(住所)를 두거나 183일('14.12.31.이전 양도분은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고,
-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를 비거주자라 합니다.

Q2. 거주자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 A.** 계속하여 183일('14.12.31.이전 양도분은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Q3. 비거주자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 A.** 계속하여 183일('14.12.31.이전 양도분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Q1.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A.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3장 (제88조 내지 제118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고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서 거주자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과세대상은 소득법 §119 9에서 별도 규정하면서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121②에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구 분		거주자	비거주자
납세의무 범위		국내·외 소재 자산	국내 소재 자산
과세대상		소득법 §94 1~4	거주자의 과세대상 자산중 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 용	적용 배제 ¹⁾
자경감면		적 용	적용 배제 ²⁾
원천납부의무		의무 없음	의무 있음 ³⁾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자	적 용	적용 배제
	기타	적 용	적 용

1) 다만,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소령 §154①2 다목)

2)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는 적용

3) 개인 간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2007.1.1.이후 양도분부터 원천징수의무 면제

Q2. 비거주자도 비과세가 되나요?

A. '10.1.1.이후 양도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보유한 국내소재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법 §89①3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 1세대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더라도 동법 §95② 표2에 정한 최고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표1에 정한 최고 30%를 적용* 합니다.

* 다만, 조특법 §98의3, §98의5, §98의6을 적용받는 과세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이면 표2에 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표 1]

보유 기간	공 제 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Q1. 어떤 경우에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세를 원천징수하나요?

- A.** '04.1.1.이후부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주식 등과 비상장 주식 등을 제외)을 양수하는 자(2007.1.1.이후는 양수자가 내국법인·외국법인 경우만으로 개정)는
- 양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합니다.

Q2. 원천징수세액은 공제가 되나요?

- A.** 비거주자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당해 양수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확정) 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 예정(확정)신고 세액을 산정합니다.

Q3. 원천징수세액 방법은?

- A.** 양도실가액×10%와 실가양도차익×20%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 '09.2.4.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III. 비거주자 등에 대한 각종 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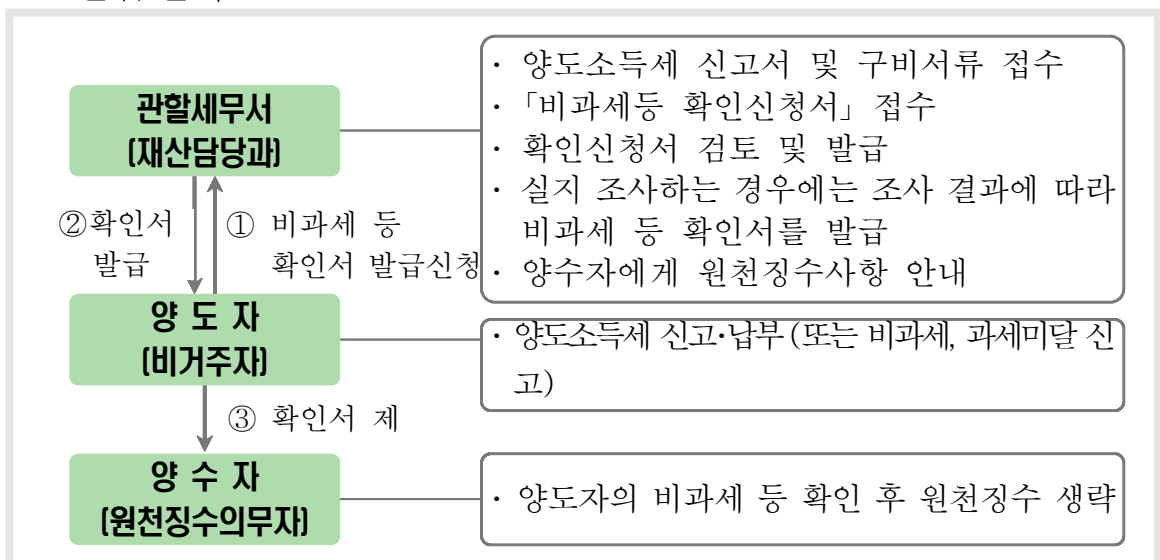
□ 「비과세 등 확인서」 발급

Q1. 비과세 등 확인서 발급 목적은?

- A.**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거나, 비과세 또는 과세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Q2. 비과세 등 확인서 발급은 어디서 받나요?

- A.** 양도자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하며,
- 다만, 비거주자인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에 의해 증명청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인감증명 경유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 증명청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 미달 신고 포함)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절차



Q3. 비과세 등 확인서 발급 대상은 누구죠?

A. 양도시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거나,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로 신고하고 동 확인서 발급(소규칙 별지 제29호의 3서식)을 신청한 비거주자입니다.

Q4. 비과세 등 확인서 발급 기간은?

A.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이며,
○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인감경유」

Q1. 재외국민 인감경유가 뭐죠?

A. 인감증명법 시행령 §13③에 따라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Q2. 재외국민 인감경유 방법은?

A. 소유권이전등기부부분에 첨부되는 재외국민 인감증명서는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세무서장의 확인(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가능)을 받아야 합니다.

○ '19년 부동산등기규칙 §61③ 개정으로 '19.1.1.부터 재외국민 인감 경유 절차 대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 으로서 인감증명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Q1.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은 어떤 경우 누가 하나요?

- A.** 재외동포가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을 국외로 반출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대상은 재외동포 중 국내원화 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자이며,
 - 발급대상 금액은 반출자금 누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할 경우 전체 금액이고,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해 발급합니다.

□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발급

Q1.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누가 어떻게 발급 받나요?

- A.**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 대금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을 국외로 반출시 매각자금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발급대상은 재외동포 중 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자이며,
 - 발급대상금액은 신고된 양도가액 범위 내이고,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4-2호 서식 또는 상속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호 서식에 의해 발급합니다.

□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Q1.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A.** 해외이주자(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를 말함)가 반출 할 수 있는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발급대상은 해외이주자(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는 날부터 3년 이내인 자 포함)이며,
 - 발급 대상 금액은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액 미화 10 만불을 초과할 경우 전체 금액이고
 -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9호 서식에 의해 발급합니다.

IV. 관련 판례

□ 비거주자 판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616 , 2016.03.25
제 목	비거주자 여부 사실판단
요 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6876 , 2014.11.27 ,
제 목	원고는 한·일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요 지	한국과 일본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항구적 주거도 양국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 국내에서 적극적인 경제·사회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점, · 국내에서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점, · 일본에서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한국으로 인정되므로 한·일 조세 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5056 , 2011.04.28
제 목	국외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비거주자에 해당함
요 지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 국외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함

□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9562 , 2010.12.17
제 목	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의 남편은 군무원인 점, · 원고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점, · 나머지 가족들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1988 , 2016.12.07
제 목	비거주자가 출국후 2년 경과한 후 국내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요 지	<p>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2006. 2. 9. 개정되기 이전부터 비거주자였던 자가 2008년 이후 국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p>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0467 , 2009.04.22
제 목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한 1세대1주택은 비과세 요건이 아님
요 지	<p>주택의 취득 당시 거기에 원고의 부친과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국내에 주소나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주자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과세 주장은 이유없음</p>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4061 , 2016.02.16
제 목	원고는 비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요 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미국으로 이주를 위한 출국일임을 자인하는 날 이후로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비거주자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사건번호	조심2013서4322 , 2014.02.12
제 목	비거주자인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 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장기 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383 , 2012.10.04
제 목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려움
요 지	소득세법§95·②·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은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려움

□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발급 경유 확인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4.22>

(앞쪽)

-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관) 확인서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위임장	위임을 받은 자 (신청인)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발급통수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 계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법 정 대리인 동 의	(성명 :)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발급통수
	년 월 일 법정대리인 : (생년월일 :) 관 계 :				
	주소 :				인 감
위의 위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수감기관(교도관)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확 인	부동산 종류				
	부동산 소재지				
위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2016. 7. 1. 개정)

발급번호						수수료 없음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이주자, □해외이주예정자)						처리기간	
						10일(필요시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또는 거소						
이주가족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와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와 관계	
확인서의 사용목적	이주비 환전	해외이주허가번호 및 일자 No. (. . .) 여권발급번호 및 일자 No. (. . .)					
이주비 금액	원(미화 \$)						
자 금 출 처 내 역							
자 금 출 처	금 액			비 고			
계							
부 동 산 매 각 대 금							
동 산, 기 타 재 산 매 각 대 금							
예 금 · 적 금							
수 증							
기 타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확인 발급되는 날 현재 자금출처가 위와 같이 확인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 인 세 무 서 장 귀하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인 세 무 서 장							
※ 붙임서류 - ‘부동산 매각대금’은 부동산 소재지·수량 및 금액이 표시된 매매계약서 사본과 그 부동산 취득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동산, 기타 재산매각대금’은 매수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이 기입된 매매계약서 또는 매수 확인서와 그 동산 취득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예금·적금’은 통장 사본 및 동 예금·적금의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수증’은 증여자의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이 기입된 확인서 - ‘기타’는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비고’란에는 자금의 원천을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신청인(본인)] <input type="radio"/> 수집·이용목적(확인서발급, 사후관리 등) <input type="radio"/>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input type="radio"/> 보유·이용기간(5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확인서 미발급 등)이 있을 수 있음							

□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2017. 5. 1. 개정)

발급번호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처리기간
					10월 (필요시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영주권취득일	
	국내거소	(연락처)			
부 동 산 매 각 자 금 내 역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자	양도가액(원)			
	확인금액(원)				
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p>외국환거래규정 및 관련 지침 등에 의해 국내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이 위와 같이 확인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대리인 :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 생년월일 :</p> <p style="text-align: center;">세무서장 귀하</p>					
<p>위와 같이 확인함</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세무서장 (인)</p>					
<p>붙임서류 1.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2.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 등)</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거소”란에는 국내체류지 및 연락 전화번호를 기재 “지목”란에는 부동산의 종류(대지,전답,아파트 등)을 기재하고 부동산소재지별로 작성한다. “양도가액”란에는 세무서에 신고된 부동산 매각당시의 가액을 기재 다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 등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부동산매각대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재 “확인금액”란에는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가액을 기재 토지수용 등의 경우 사업시행소관부처장의 확인서를 첨부 <p>※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신청인(본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이용목적(확인서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5년) <p>☞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확인서 미발급 등)이 있을 수 있음 					